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범위 확대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411호, 2021. 8. 17. 공포, 2022. 2. 18. 시행)됨에 따라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)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
2.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
3.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
4.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,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,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
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해 필

요한 기관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2항제4호”를 “법 제4조제2항제7호”로 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
 2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(법 제2조제4호바목의 경우는 제외한다.)
-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
 2.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계획
 3.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

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·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건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,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 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⑦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이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마목을 제외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도 각각 지정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이 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(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)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, 시행결과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시행결과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.

제1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”를 “거점의료기관,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”로 한다.

3.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)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</u> <u>2.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</u> <u>3.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</u> <u>4.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,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,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</u> <u>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</u>

제3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관

제3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법 제4조제2항제7호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

2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(법 제2조제4호마목의 경우는 제외한다.)

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

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

2.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계획

3.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·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기관을 책임

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,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⑦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이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마목을 제외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도 각각 지정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이 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3조의3(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)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

제14조(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
결과 평가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제15조(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
등의 지정 취소 사유) 법 제18
조제1항제6호에서 “보건복지부
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
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은 매년 1월 31일까지, 시행결
과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시
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
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시행
결과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
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4조(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
결과 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
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
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
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
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
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
매년 평가한다.

제15조(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
등의 지정 취소 사유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조건
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책임의
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

3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<u>거점의료기관</u> 또는 <u>공공전문진료센터</u>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	<u>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</u> 4. ----- ----- ----- <u>거점의료기관,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</u>----- -----
---	---

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	2개월
의료기관	명 칭	의료기관 종류	요양기관 번호
	주 소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면허번호	
	개설 전문과목	허가 병상 수	
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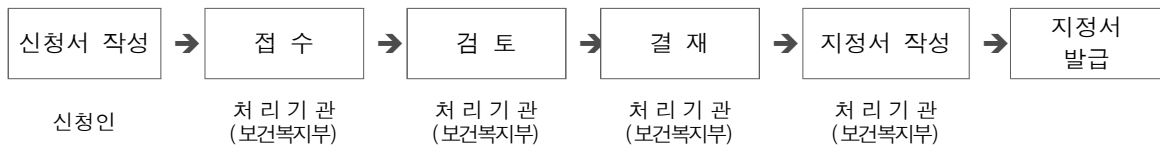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사업계획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제 호

책임의료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명 칭: ○○ 책임의료기관

위 기관을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